#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72

발의연월일: 2025. 4. 16.

발 의 자:윤재옥ㆍ김상훈ㆍ김정재

김기웅 · 최수진 · 정희용

김민전 • 서천호 • 서지영

김소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공사의 재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공항시설 등이 국가로 귀속되도록 하 고 있어 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신공항 건설에 대한 공사의 투자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인천공항공사(이하 인천공사)의 경우 인천공사가 조성한 토지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따르도록 현행 법에 예외를 명시하여 인천공사의 재원으로 시행한 개발사업을 인천 공사에 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공사에 대해서도 인천공사와 같은 예외를 명시하여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신공항 건설 등 국가 정책사업에 대한 공사의투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1조제4항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62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에 투자하거나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한국공항공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투자허가ㆍ시설물의 귀속	제21조(투자허가ㆍ시설물의 귀속
등) ① ~ ③ (생 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
	공사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에 투자하거나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
	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해
	당 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
	치된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한국공항공사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